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84

발의연월일: 2022. 8. 30.

발 의 자: 강준현·김상희·홍성국

박상혁 • 이정문 • 김민기

최혜영 • 기동민 • 임호선

김원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1·2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자족기능 완성을 위한 3단계 개발을 진행 중으로, 대학유치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9에 따라 공동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행복도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하여 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융합효과를 극대화하는 공동캠퍼스가 '2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캠퍼스를 관리·운영할 공익법인 설립이 필요한 시점임. 하지만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법인이 자력으로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설립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임.

공동캠퍼스의 개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세종공약사항에도 반영 되어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대한 정부의 제도 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입주하는 대학과 캠퍼스의 시설 관리, 추가 우수 대학 유치·홍보, 입주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법률안은 성공적인 공동캠퍼스 건립·운영을 통해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행복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재정 자립도 제고와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제2항제11호 신설 및 제63조의9제5항).

법률 제 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3조의9제5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②
와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
	한 비용
<u>11.</u> (생 략)	<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 ④ (생 략)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
	<u>ㅇ</u>)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5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	
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	
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	
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u>있</u>	<u>있으며,</u>
<u>다</u> .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다
령으로 정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